

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별 첨
4. 검 토 의 견 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9월 8일
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전문위원 임 목

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9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8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폐지이유

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고,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를 폐지함.

3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 조례 안은

현실에 맞지 않고 운영실적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

○ 본 폐지 조례 안 검토결과

시민의 법률상담은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

법률상담 문의 시 전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하고 있고, 유권해석의 경우 대통령령인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과 우리시 「법제사무처리규정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, 법무부, 법제처 또는 소관 담당관·과장이 해석하여야 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함.